

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인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당초 심의 의결하였으나 추가수입 및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 요구함.

□ 주요골자

-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세입·세출 계획을 당초규모 1,096,159천원에서 1,219,738천원으로 변경함.

□ 검토의견

- 동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지난 제4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심의 의결하였으나 추가수입 및 지출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추가 수입 및 지출요인 발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지 방 제 정 법

제110조 (기금의 운용등)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지 방 자 치 법

제35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5. 기금의 설치·운용